

사이버폭력의 유형별 설명 및 사례

유형	명칭	설명 및 사례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저격	SNS상에서 피해 대상에게 게시글이나 댓글로 비난하는 행위
	패드립	패륜+드립의 합성어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그 외 가족 친지를 농담의 소재로 삼아 모욕하는 행위
사이버 갈취	셔틀	핫스팟 연결을 강요하여 공짜로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기프트콘이나 게임아이템 등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ex) 모바일 앱전동 키펀드 등에 유료 결제 정보를 도용하여 결제액을 부담시킨 사례
	게임부주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여 레벨을 올려주거나 아이템을 얻어주는 사람을 의미하나,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요구(금품요구, 협박)를 하는 행위
사이버 강요	인증놀이	수치스럽거나 하기 싫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여 인증하도록 하는 행위
	디지털 그루밍	온라인 메신저,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
	랜선팸 (단팸/단톡/틱O크루)	'랜선팸'은 온라인에서 취향에 맞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유대를 쌓는다는 의미로 '팸'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일을 시키는 행위, '단팸'은 단체 O이스북 메신저, '단톡'은 단체 O톡방, '틱O크루'는 틱O앱의 크루원을 모집하는 기능에 해당함
사이버 따돌림	방폭	피해학생을 단체대화방에 초대해 놓고 모두가 다 퇴장하여 온라인 상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멤 놀	멤버놀이의 줄임말로 멤버놀이는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가장해 인터넷 공간에서 역할놀이를 하는 것임, 역할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명을 몰아서 비방하거나 따돌리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음
	부계	SNS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정 대신 다른 계정(부계정)을 만드는 것으로, 타인의 허락 없이 사진 등을 게시하고 친구를 따돌리는데 이용하기도 함
개인정보 유출	타인의 카카오톡 계정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강제로 갈취하여 이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ex) 단체 대화방에 강제로 초대하여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협박하여 갈취하고, 다른 친구를 초대하고 나가도록 강요한 사례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지인능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 합성, 가공, 유포하는 행위 (ex) 딥페이크 등 시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다른 사진/동영상과 합성하여 텔레그램 등 SNS에 유포한 사례
	몸캠피싱	온라인상에서 서로 몸을 보여 주면서 화상 대화(몸캠)하도록 유도하여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도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인(보호자용) 수정



2025년 개정판

보호자용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사이버 폭력예방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

응원할게!
잘하고 있어!
함께해요~!

건강한 사이버 세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도란도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종합서비스 도란도란

doran.edunet.net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치를 받거나,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이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사이버 언어폭력**
정보통신망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 사이버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사이버 갈취**
정보통신망이나 매체를 통해 사이버머니나 스마트폰 데이터 등의 금품을 빼앗는 행위
- 사이버 강요**
정보통신망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사이버 따돌림**
OO톡, SNS DM, 메타버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사이버 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SNS 상의 쪽지나 댓글 등), 사진,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괴롭히는 행위
- 개인정보 유출**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이름, 거주지, 소속 학교 등)를 유포하는 행위
- 사이버 성폭력**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 (성적인 묘사나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을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제작 및 퍼뜨리는 행위

사이버폭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익명성 가해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언어,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가해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24시간 괴롭힐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벗어나기가 더 어렵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확산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빠른 전파성, 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2차 피해 발생 위험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됩니다. 또한 피해자 부모의 개인정보 도용, 패드립 등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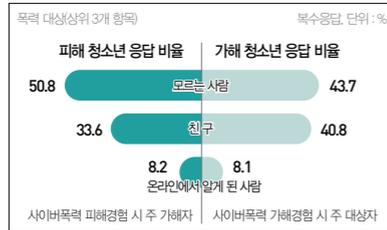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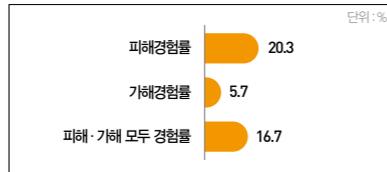
비대면성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정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더 잔인하게 사이버폭력이 진행됩니다.

은밀성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물리적인 폭력과 달리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 신혜진(2023)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개선 방안 수정

사이버폭력 파·가해 발생현황

- 1년 내 사이버폭력 피해 또는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42.8%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피해를 준 사람과 가해의 대상 모두 ①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②친구, ③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피해와 가해 모두 ①언어 폭력, ②명예훼손 유형 비율이 가장 높았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5) 202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사이버폭력 이렇게 예방해요

- ✓ 학교 친구들을 장난으로 괴롭히지 않고, 신중하게 대화하도록 교육합니다.
- ✓ SNS와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 ✓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을 수락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 사이버 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의 제안을 따르지 않도록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 ✓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는 출처와 작성자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 위치정보를 필요할 때만 활성화하도록 알려줍니다.
- ✓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 ✓ 부모의 개인정보를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이버폭력 유해정보 차단 앱



사이버폭력 이렇게 대응해요

- 01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02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확인합니다.
- 03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 04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 05 학교, 전문 기관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06 학교나 경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여 전체 처리 과정을 확인합니다.
- 07 자녀의 치료와 교육에 함께 참여합니다.
- 08 피해의 원인을 자녀에게 돌려서는 안됩니다.
- 09 자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대화합니다.

- * 참고
- 불법 촬영물 유통 등으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3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에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이럴 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1 학생이 스마트폰을 현저하게 적게 이용하거나 자주 꺼놓는다. 또는 SNS 계정을 갑자기 탈퇴한다.
- 2 문자메시지나 메시지를 본 후 당황하거나 괴로워한다.
- 3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스마트 기기 등)를 자주 확인하고 부모가 기기를 만지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 4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5 SNS 상태글귀나 사진의 분위기가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6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사이버폭력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이버폭력,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 문자/전화신고** 문자신고 #0117, 국번없이 117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safe182.go.kr
-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신고 상담서비스 제공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
- 사이버범죄 신고, 상담 서비스 제공

사이버폭력 예방,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도란도란** doran.edunet.net
-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 정책, 자료, 도움기관 등 안내
-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btf.or.kr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온라인 상담 제공
- 디지털윤리** 디지털윤리.kr
- 디지털 역량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사이버폭력 예방,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Wee** 우리가 희망이다 wee.go.kr
- 위(Wee) 프로젝트 및 상담 안내
- 청소년 1388** 1388.go.kr
-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1:1 채팅 및 비밀상담 등)
- 웹 심리검사 제공(청소년 및 부모 대상)
- 스마트심센터** iapc.or.kr
-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상담 제공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National Center for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d4u.stop.or.kr
- 디지털성범죄 자료 삭제 및 상담 제공(02-735-8994)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상담1388



상다미샘



푸른코끼리



어울림

모바일 앱